



일반공급(1·2순위) 청약안내 ①

| 구분 | 신청 일시 | 신청 방법 | 신청 장소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1순위 청약 | 2024. 11. 12. (화) 09:00 ~ 17:30 | 인터넷 청약 (PC 또는 스마트폰) | 한국부동산원 '청약Home' 홈페이지 - PC : www.applyhome.co.kr - 스마트폰 : '청약Home' |
| 2순위 청약 | 2024. 11. 13. (수) 09:00 ~ 17:30 | | |
| 당첨자 발표일 | 2024. 11. 20. (수) | 한국부동산원 '청약Home' 홈페이지(www.applyhome.co.kr) 확인 가능 | |

1순위 청약체크포인트

CHECK POINT 1

19세 이상
누구나 청약 가능!

세대주 및 세대원 청약 가능,
세대 구성원 중복청약 가능

CHECK POINT 2

수도권 전 지역
청약 가능!

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/인천/서울 거주자
(단, 경쟁 시 이천시 거주자 우선)

CHECK POINT 3

다주택자 청약 가능

주택수 상관없이 청약 가능

CHECK POINT 4

재당첨 제한 無
기존 당첨 사실 있어도 청약 가능!

단, 2년 내 가점제 당첨 사실 있을 경우
가점제 청약 불가, 추첨제 청약 가능

CHECK POINT 5

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

청약통장 가입 기간 및
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 충족 시

CHECK POINT 6

전매 제한 3년/거주의무 無

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
(단, 3년 이내 입주시 등기이전일까지)

거주지역 요건

| 해당지역 우선 공급 | 지역구분 | |
|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| 해당지역 | 기타지역 |
|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(경기·서울·인천) 거주자 청약 가능 단, 경쟁 시 이천시 거주자 우선 | 이천시 거주자 | 수도권(경기·서울·인천) 거주자 |

순위별 요건[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]

| 구분 | 신안인스빌 퍼스티지 주택형 | 가점제 적용비율 | 1순위 청약통장 요건 | | | 2순위 청약통장 요건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|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| | | |
| | | | 이천시 및 경기도 | 인천광역시 | 서울특별시 | |
| 전용 85㎡ 이하 | 59A-B㎡ | 가점제 40% 추첨제 60% | 200만원 | 250만원 | 300만원 | 청약통장 가입자여야 함 (기간·금액 상관無) |

청약접수일 기준 청약신청 자격 변경 요건

* 입주자 모집공고일(2024.10.31)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청약예금, 청약부금, 청약저축 → 종합저축 전환 |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|
| 청약저축 → 청약예금 전환 |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(청약예금으로 통장 변경 후 청약저축으로 재 변경 불가) |
| 청약예금 규모 변경 |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(큰 주택형 청약 시 변경, 하위 면적은 변경없이 모두 청약 가능) |
| 주택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| 입주자 모집공고일(2024.10.31) 당일까지 |
|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| 청약신청 접수 당일까지 |

*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(24.10.31일 포함) 종전통장(청약예금, 청약부금, 청약저축)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,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본 안내문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것으로 편집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, 반드시 청약 신청 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



일반공급(1·2순위) 청약안내 ②

일반공급 1순위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

| 구분 | 내용 | | | | | | |
|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|
| 신청 자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이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(경기도,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)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(자녀 양육, 형제자매 부양) ·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 | | | | | | |
| | 1순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청약예금 :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: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,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(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형에 한함)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| | | | | |
| | 2순위 |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·청약부금·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| | | | | |
| 선정 순서 | 1순위 가점제 | ①지역 → ②가점 →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→ ④추첨 | | | | | |
| | 1순위 추첨제 | ①지역 →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→ ③추첨 | | | | | |
| | 2순위 | ①지역 → ②추첨 | | | | | |
| ①지역 | 해당지역 거주자(이천시 거주자) → 기타지역 거주자(경기도, 서울시, 인천시 거주자) | | | | | | |
| ②가점 | 가점항목 | 가점상한(총84점) | 가점구분 | 점수 | 가점구분 | 점수 | |
| | ① 무주택기간 | 32 | |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| 0 | 8년 이상 ~ 9년 미만 | 18 |
| | | | | 1년 미만 | 2 | 9년 이상 ~ 10년 미만 | 20 |
| | | | | ~ 2년 미만 | 4 | 10년 이상 ~ 11년 미만 | 22 |
| | | | | 2년 이상 ~ 3년 미만 | 6 | 11년 이상 ~ 12년 미만 | 24 |
| | | | | 3년 이상 ~ 4년 미만 | 8 | 12년 이상 ~ 13년 미만 | 26 |
| | | | | 4년 이상 ~ 5년 미만 | 10 | 13년 이상 ~ 14년 미만 | 28 |
| | | | | 5년 이상 ~ 6년 미만 | 12 | 14년 이상 ~ 15년 미만 | 30 |
| | | | | 6년 이상 ~ 7년 미만 | 14 | 15년 이상 | 32 |
| | 7년 이상 ~ 8년 미만 | 16 | | | | | |
| | ② 부양가족수 (청약신청자 본인 제외) | 35 | | 0명 | 5 | 4명 | 25 |
| | | | | 1명 | 10 | 5명 | 30 |
| 2명 | | | | 15 | 6명 이상 | 35 | |
| 3명 | | | | 20 | | | |
|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| 17 | 본인 | 6개월 미만 | 1 | 8년 이상 ~ 9년 미만 | 10 | |
| | | | 6개월 이상 ~ 1년 미만 | 2 | 9년 이상 ~ 10년 미만 | 11 | |
| | | | ~ 2년 미만 | 3 | 10년 이상 ~ 11년 미만 | 12 | |
| | | | 2년 이상 ~ 3년 미만 | 4 | 11년 이상 ~ 12년 미만 | 13 | |
| | | | 3년 이상 ~ 4년 미만 | 5 | 12년 이상 ~ 13년 미만 | 14 | |
| | | | 4년 이상 ~ 5년 미만 | 6 | 13년 이상 ~ 14년 미만 | 15 | |
| | | | 5년 이상 ~ 6년 미만 | 7 | 14년 이상 ~ 15년 미만 | 16 | |
| | | | 6년 이상 ~ 7년 미만 | 8 | 15년 이상 | 17 | |
| | | | 7년 이상 ~ 8년 미만 | 9 | | | |
| | | 배우자 |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 미가입 | 0 | ~ 2년 미만 | 2 | |
| 1년 미만 | 1 | 2년 이상 | 3 | | | | |
| * 2024.03.25. 시행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별표1의 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. -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 : 전체 가입 기간의 50%, 최대 3점까지만 인정, 합산 점수는 17점을 초과할 수 없음. - 배우자 청약통장 증빙서류 : ①통장 순위 확인서 ②당첨 사실 확인서(청약홈에서 발급 가능, 배우자 통장은 계약 시까지 유지) * 가점제 유의사항 -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불가, 가점제로 청약당첨 시 부적격 처리. - 1순위 가점제로 당첨 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1순위 가점제 청약 불가. | | | | | | | |
| ③청약통장 가입 기간 | 입주자저축의 종류, 금액,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* 단,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| | | | | | |
| ④추첨 | 무주택자 우선 공급 :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,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. | | | | | | |
| | 구분 | 비율 | 내용 | | | | |
| | 1단계 | 추첨제 물량의 75% | 무주택세대구성원 | | | | |
| | 2단계 |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|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| | | | |
| 3단계 |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|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| | | | | |